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동현, 고병국, 권영희, 김태호, 김혜련,
신정호, 오한아, 이광호, 최 선, 최응식
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분리되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으로 제정(2018.4.17.)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‘장애’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 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함(안 제5조제1항).
- 기타 일부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1호 중
“제61조 단서”를 “제61조제2항”으로 하며, “공무시행”을 “공무활동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”을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
시행령」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
급까지”를 “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의 장애등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직무”란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회기(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)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한 <u>공무시행</u>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9조의 <u>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<u>제1급부터 제14급까지</u>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제61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무활동</u>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<u>별표 2의 공무원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</u>-----.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 ----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의 장애등급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